

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(제14조의9제4항 관련)

1. 시설·장비 기준

가. 시설 기준

총 바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, 항온·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,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·구획되어 있어야 한다.

나. 장비 기준

1)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: 다음의 장비·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| 구분       |            | 장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량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폭발성      |            | 시간·압력 시험장비 또는 열·충격·마찰 등의 민감도 시험장비    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| 인화성(액상)  |            | 태그 밀폐식 시험장비, 펜스키마텐스 시험장비 또는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장비           | 1식 이상 |
| 인화성(고상)  |            | 작은불꽃착화 시험장치, 연소속도 시험장비 또는 인화점 측정장비   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| 자연발화성    |            | 공기접촉에 의한 자연발화여부 관찰 시험장비 등의 자연발화성 시험장치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| 금수성      |            | 물과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가스포집 시험장비 등의 금수성 시험장치  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| 산화성(액상)  |            | 시간·압력 시험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| 산화성(고상)  |            | 연소시험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| 용출<br>독성 | 무기<br>물질류  |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대 이상 |
|          | 유기 물<br>질류 | 기체크로마토그래피(질소·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)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-질량분석기 | 1대 이상 |
| 부식성      |            | 강판부식성 시험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| 생태독성     |            |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식 이상 |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특성(용출독성은 제외한다)의 시험·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·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1.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26호에 따라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
2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특성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
3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대행업 등록을 한 자(생태독성에 대한 시험·분석이 가능한 자만 해당한다)

## 2)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

| 장비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량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유리재질의 컬럼, 액체정량펌프, 시료충진도구 등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세트 | 1식 이상 |
| 오염물질 등의 이동·흡착·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       | 1식 이상 |

2. 기술인력 기준: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| 기술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공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토양환경, 환경보건, 환경과학, 환경위생, 환경화학, 자연환경, 폐기물처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화학공학, 화학, 안전공학, 공업화학, 토목, 토목시공, 응용지질<br>관련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기관리, 대기환경, 소음·진동, 수질환경, 토양환경, 폐기물처리, 자연생태복원, 화공, 화학분석, 토목, 위험물관리 |
| 나. 기사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산업기사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| 환경과학, 환경공학, 환경보건, 환경위생, 환경화학, 독성학, 화학공학, 공업화학, 화학, 생화학, 자원공학, 지질학, 토양환경, 토목공학, 도시계획학, 생물학, 미생물학, 기계공학, 농화학, 농생물학, 물리학, 보건학, 의학 관련 학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1.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,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

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.

2.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3.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4. 산업기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5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6.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.
7.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.
8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.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